# 긴급 입찰 사유서

## □ 사업개요

o 사업명 : 경기도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및 RE100 플랫폼 서비스

구축 사업

o 예산액 : 3,488,199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

0 사업기간 : 착수일로부터 10개월

## □ 관련규정

0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5조

#### 제35조(입찰공고의 시기)
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. 15.>
- 1.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
- 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3.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4.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・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5.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

<개정 2016. 1. 15., 2019. 6. 25.>

#### □ 긴급입찰 사유

o 본 사업은 경기도 내 자연환경관리, 탄소중립, 기후위기 대응, 도시계 획 등의 정책을 수립·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고정밀 공간환경정보인 도시생태현황지도

및 데이터 등을 이용한 기후 정보 종합 플랫폼 사업임

- o 본 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RE100 사업의 핵심 IT플랫폼으로서 RE100 사업의 4대 추진과제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
- o 본 용역은 <sup>1)</sup>경기도와 국토지리원, 카카오모빌리티 등 15개 기관과 2025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상호 협력을 약속한 과제로서 경기도 뿐 아니라 여러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완료 일정이 선정되었음
- o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 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나,
- o 구축 사업일정을 고려하여 최소 10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긴급입찰을 통한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긴급입찰을 추진코자 함
- o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5조 제4항 1의3호에 의거, 사업발주에서 계약까지의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긴급 입찰공고를 요청드림

<sup>1) 2024</sup>년 5월 31일 도지사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「기후위기 대응 위한 'RE100 플랫폼' 구축위해 국토지리연구원, 카카오모빌리티 등 15개 기관과 협력 약속」